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형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843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김형재, 김길영, 김용호,
김춘곤, 남창진, 박성연,
박철성, 송도호, 이상욱,
한·신 의원(10명)

1. 제안이유

-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며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시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통계)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실태조사), 제8조(컨설팅 지원) 및 제9조(교육 및 홍보)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중대재해예방과)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도 중대재해 예방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5조	서울시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237,650
	(안전보건이행 실태점검)(붙임1)	(47,250)
제8조	중대재해감시단 운영(붙임2)	107,300
제9조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붙임3)	166,000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1] 2024년 서울시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01 ~ 2024.12.
-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
 - 산업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및 운영
 - 상시노동자 50명 이상 사업장 대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정
 - 상시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산업보건의 위축 및 운영
 -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의무 이행실태 점검 실시 (2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본청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 실시

[붙임 2] 2024년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 운영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01 ~ 2024.12.
- 지원대상 :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원(중대재해감시단원, 안전관리자문단 소속 전문가)
- 추진방법 : 중대재해감시단 25명 운영(1일 11개반, 주5일, 반별2명, 2개 현장)
- 주요내용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합동점검
 - 계절적, 사회적 재난발생 우려지역 안전점검
 - 점검결과 지적사항 안전조치명령 및 불이행자 조사

[붙임 3] 2024년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용역(상·하반기 총 2회)

- 사업기간 : 2024.01 ~ 2024.12.
- 점검대상 : 27개 실·본부·국 및 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상황 여부 점검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대비를 위한 홍보물 제작

- 사업기간 : 2024.01 ~ 2024.12.
- 배포대상 :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등
- 인쇄부수 : 4,000부
- 소요예산 : 8백만원

○ 위원회 수당 및 자문비

- 자문기간 : 2024.01 ~ 2024.12.
- 참석 및 자문대상 : 안전자문회의 위원, 법무법인,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 자문내용 :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서울시 대응방향 전반에 관한 내용
- 소요예산 : 12백만원

○ 유해위험요인 우수아이디어 제출 직원 유공 포상금

- 사업기간 : 2024.01 ~ 2024.12.
- 주요대상 : 서울시 직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주요내용 : 2024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신고 또는 점검관리 개선 아이디어 등 제안 직원에게 상장 및 상금 지급
- 소요예산 : 16백만원

○ 언론협력사업

- 사업기간 : 2024.01 ~ 2024.12.
- 주요대상 : 일반시민
- 주요내용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업 언론사 광고홍보 등
- 소요예산 : 30백만원